

#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제361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5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, 세외수입·예치금회수 등을 세입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비·예치금 등을 세출로 하는 기금에 관하여,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함.

## 2. 주요내용

〈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〉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4년도말 조성액	2025년도 운용 계획			2025년도말 현재액
		수입	지출	증감	
계	791,057	155,256	305,681	△150,425	640,632
식품진흥기금	791,057	155,256	305,681	△150,425	640,632